

- 1 (H)

[]

이 투자설명서는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 1 호(H)"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대신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투자신탁운용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1호(H)

투자신탁명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 1 호(H)
자산운용회사명	대신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해외위탁자산 운용회사명	샘 서스테이너블 에셋 매니지먼트 (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Limited)
판매회사명 및 상당가능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경남은행 (☎ 1600-8585) ☐ (주)광주은행 (☎ 1588-3388) ☐ 대신증권(주) (☎ 1588-4488) ☐ 메리츠증권(주)(☎ 1588-3400) ☐ 신한증권(주)(☎ 080-7733-080) ☐ 외환은행(주) (☎ 1544-3000) ☐ 우리은행(주) (☎ 080-365-5000) ☐ (주)하나은행 (☎ 1588-1111) ☐ CJ투자증권(주)(☎ 1588-7171) ☐ 대신투자신탁(주)(☎ 02-769-3246) <p style="color: red; margin-top: 10px;">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p>
작성기준일	2008년 3월 4일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대신투자신탁운용(주) 인터넷 홈페이지(www.ditm.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6-7쪽)

- 명 칭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 1 호(H)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71175)
-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 종 류 : 증권투자신탁/모자형(자투자신탁)/주식형/추가형/종류형/개방형
- 자산운용회사 : 대신투자신탁운용(주)
-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샘 서스테이너블 에셋 매니지먼트(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II 투자정보(☞본문 8-16쪽)

구 분	주 요 내 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투자신탁은 주로 “지구온난화의 완화·적응·대응 분야 산업과 관련된 전세계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 하여 투자자에게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함. -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투자신탁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비교지수(BM) : MSCI World(Euro)*90% + Call Rate*10% 												
2.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투자신탁-모」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임. - 모투자신탁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향후 가장 유망하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전세계 기업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며, 지구온난화 관련 산업가운데 지구온난화완화, 지구온난화적응, 지구온난화대응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함 -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전략을 실시함 												
3. 주요 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해외증권투자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내외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환헤지전략을 최대한 실행할 예정이나, 현실적으로 환율변동위험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으므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함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itm.co.kr)에서 확인 가능함 												
6. 운용전문인력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 명</th> <th rowspan="2">직 위</th> <th colspan="2">운용현황</th> <th rowspan="2">주요운용경력</th> </tr> <tr> <th>펀드수</th> <th>자산규모</th> </tr> </thead> <tbody> <tr> <td>신민수</td> <td>펀드매니저</td> <td>8</td> <td>710억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신투신 해외사업부 해외펀드운용 - 메트라이프 자산운용팀 변액펀드 운용 </td> </tr> </tbody> </table> <p>* 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운용은 해외위탁운용사인 샘 서스테이너블 에셋 매니지먼트의 PhD, Thiemo Lang을 대표펀드매니저로 한 운용팀에서 운용합니다.</p>	성 명	직 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펀드수	자산규모	신민수	펀드매니저	8	7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신투신 해외사업부 해외펀드운용 - 메트라이프 자산운용팀 변액펀드 운용
성 명	직 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펀드수	자산규모										
신민수	펀드매니저	8	7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신투신 해외사업부 해외펀드운용 - 메트라이프 자산운용팀 변액펀드 운용 									
7. 투자실적추이	설정후 1년미만펀드로서 해당사항 없음												

매입·환매 관련 정보(☞본문 17-18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클래스 A1	클래스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W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50억 이상 100억 미만 매입	100억 이상 200억 미만 매입	200억이상 매입	판매회사 일임형 Wrap계좌보유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	-	-	-	-	-	
	환매수수료 ¹⁾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50%	이익금의 50%	이익금의 50%	이익금의 50%	이익금의 50%	이익금의 50%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90%	연 0.90%	연 0.90%	연 0.90%	연 0.90%	연 0.90%
		판매회사보수	연 0.80%	연 1.80%	연 0.20%	연 0.10%	연 0.05%	연 0.00%
		수탁보수	연 0.06%	연 0.06%	연 0.06%	연 0.06%	연 0.06%	연 0.06%
		일반사무관리보수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연 0.02%
보수합계		연 1.78%	연 2.78%	연 1.18%	연 1.08%	연 1.03%	연 0.98%	
기타비용 ²⁾		연 0.015%	연 0.015%	연 0.015%	연 0.015%	연 0.015%	연 0.015%	
총보수·비용비율 ³⁾		연 1.795%	연 2.795%	연 1.195%	연 1.095%	연 1.045%	연 0.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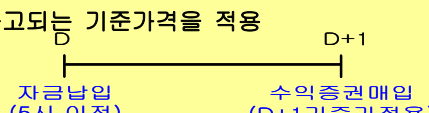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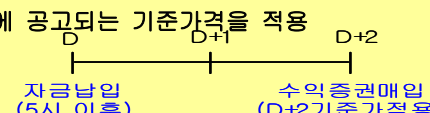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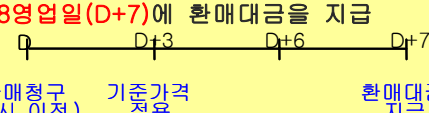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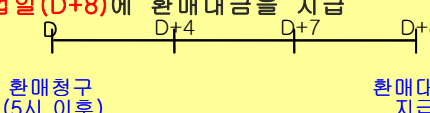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종류수익증권별 기준에 따라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추정치임

3)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8.1.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세부사항은 본문참조)

3. 매입·환매절차 :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에만 가능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 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 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8 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9 영업일(D+8)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1588-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ngnambank.co.kr, www.kjbank.com, www.daishin.co.kr, www.imeritz.com, www.shs.co.kr, www.keb.co.kr, www.wooribank.com, www.hanabank.co.kr, www.cjcyber.com, www.ditm.co.kr)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 (점포명)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 (은)는(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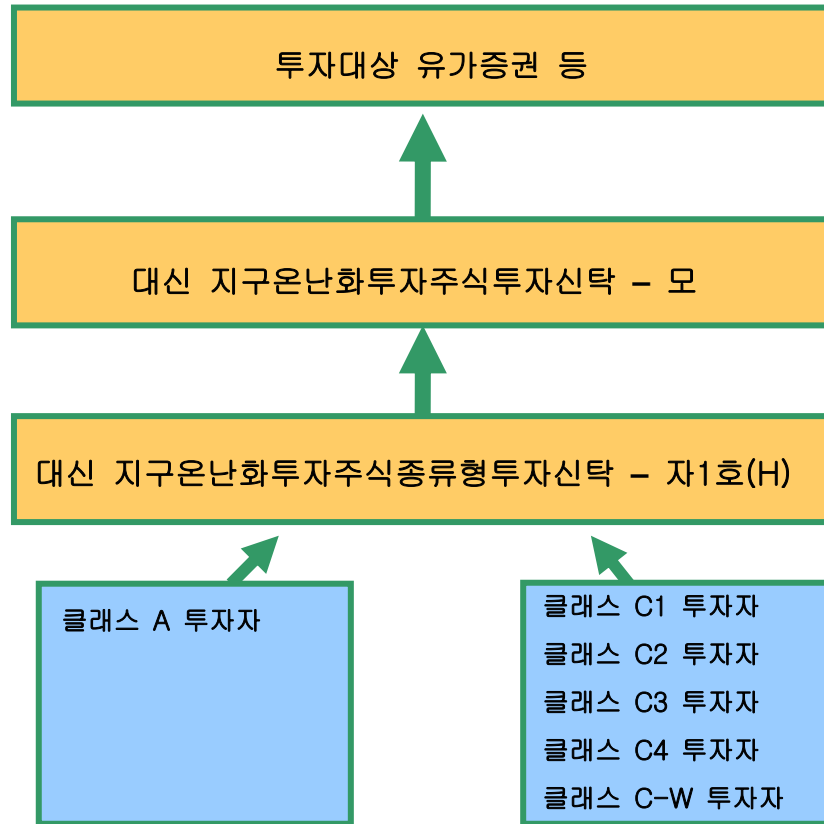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서명 또는 (인)

제 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 칭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 1 호(펀드코드: 71175)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 1 호 Class A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 1 호 Class C1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 1 호 Class C2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 1 호 Class C3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 1 호 Class C4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 1 호 Class C-W
2. 분 류 : 증권투자신탁/모자형(자투자신탁)/주식형/추가형/종류형/개방형
3. 자산운용회사 : 대신투자신탁운용(주)
4. 해외위탁자산 : 샘 서스테이너블 에셋 매니지먼트(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운용사 업무위탁 범위 : 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 단, 운용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대신투자신탁운용(주)에 있습니다.**
5. 최초설정일 등: 2007년 7월 4일 설정
연혁
6. 수탁고 추이 : 설정이후 1년미만펀드로서 해당사항 없음
7. 해지 사유 :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투자신탁재산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 1호(H)의 구조(모자형, 종류형)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투자신탁 - 모는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유로화와 투자대상국의 현지 통화간의 환해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 - 자 1호(H)는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유로화 대비 원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하여 환해지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로화와 원화간 환해지를 실행하지 않는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 - 자 2호(UH)와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위탁운용사 개요

- 샘 서스테이너블 에셋 매니지먼트(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 샘(SAM)은 2007년 4월 25일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인 대신투자신탁운용(주)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당해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 업무 등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입니다.
 - 샘(SAM)은 1995년 설립되어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성투자분야의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전문자산운용사입니다.
 - 샘(SAM)은 전세계 1,000개 이상의 지속가능기업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심층적인 리서치 능력을 바탕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의 산출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무적·비재무적 통합분석에 의한 체계적인 투자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I. 투자정보

1. 투자 목적

- 당해 투자신탁은 **“지구온난화의 완화·적응·대응 분야산업과 관련된 전세계 기업 등” 이 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한 외국주식(공모주포함)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증대를 추구합니다. 또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38 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 당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BM)= MSCI World(Euro)*90% + Call Rate*10%

2. 주요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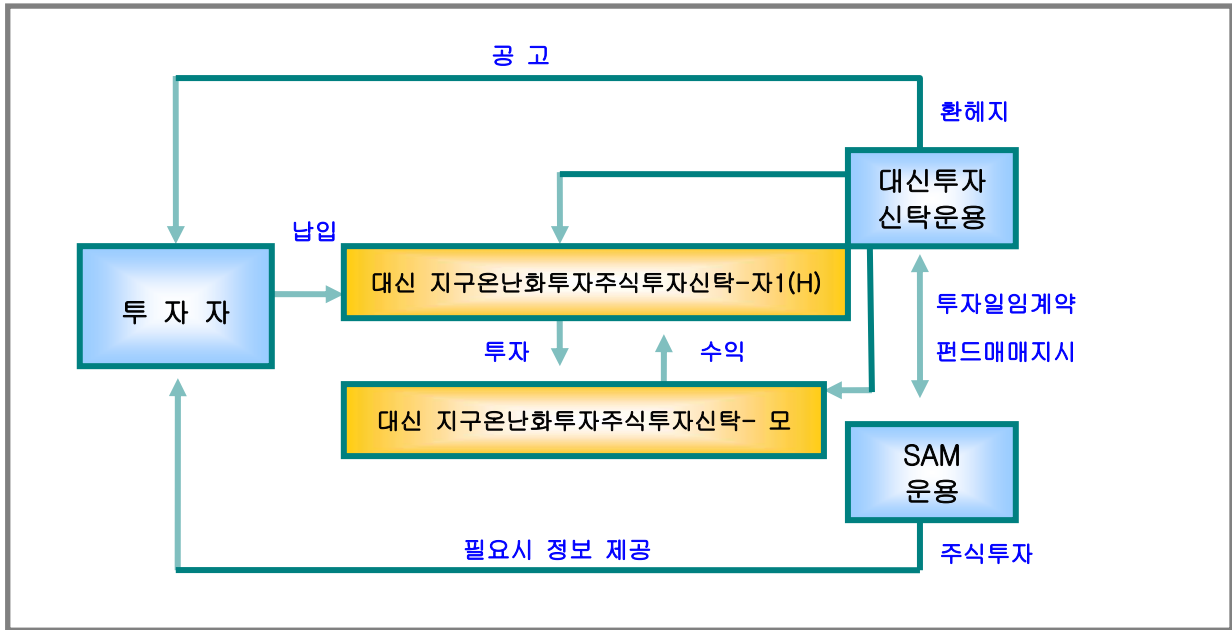
(1) 유가증권 투자전략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투자신탁 모신탁에 주로(90%수준) 투자하고 나머지 유동성 자산은 채권,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향후 가장 유망하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전세계 기업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며, 지구온난화관련 산업가운데 지구온난화완화, 지구온난화적응, 지구온난화대응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 ✓ 지구온난화산업과 관련되고 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외국기업주식(공모주)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등의 금리, 주가,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자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도 환매시 또는 편입자산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에의 투자는 지속가능성투자부문의 선도적 전문운용사인 샘 서스테이너블 에셋 매니지먼트(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에 위탁운용되며 대신투신운용(주)가 모니터링과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2) 환위험관리전략

-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모투자신탁 표시통화인 유로화 대비 자투자신탁 표시통화인 원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자투자신탁차원에서 환헤지를 합니다(목표헤지 비율: 90%±10%)**. 그러나 펀드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 헤지,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 모투자신탁의 표시통화인 유로화와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지역의 현지통화간 환헤지는 별도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이에 따른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주로 미국달러화 등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9 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중 '1. 투자전략'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당해 투자신탁은 주로 외국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해외금융시장의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익자는 외국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당해 투자신탁에서 고려되는 주요 투자위험으로는 주가변동에 따른 주식가격 변동의 위험과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 그리고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 등이 있습니다.

(1) **주식가격 변동의 위험:**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이 해외주식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2) **환율변동위험:** 모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지구온난화의 완화 적응·대응 분야산업 관련 외국주식(공모주포함) 등에 주로 투자하여 각국 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산의 통화가치가 한국원화 대비 하락 시에는 이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유로화로 환전된 자금 및 유로화로 표시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금액이 원/유로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서,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이용한 헤지거래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100% 완전 헤지는 불가능하며,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 평가액의 90±10% 범위내에서 환헤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펀드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 헤지,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원/유로화 환율에 대한 환헤지 거래에도 불구하고 모투자신탁의 표시통화인 유로화 대비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지역의 현지통화간에는 별도로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단, 달러화는 환헤지 실행) 이 투자신탁은 유로화 대비 투자대상국 현지통화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이에 따른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국내 채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신탁의 신탁자산의 일부가 국내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게 되며 금리변동에 따라 동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4)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또는 국내 채권, 단기 유가증권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

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국가위험**: 투자신탁에 편입되는 지구온난화의 완화·적응·대응 분야산업과 관련된 전세계의 해외 자산투자와 관련된 국가의 정치적, 법률적, 경제적 또는 규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을 말합니다.

※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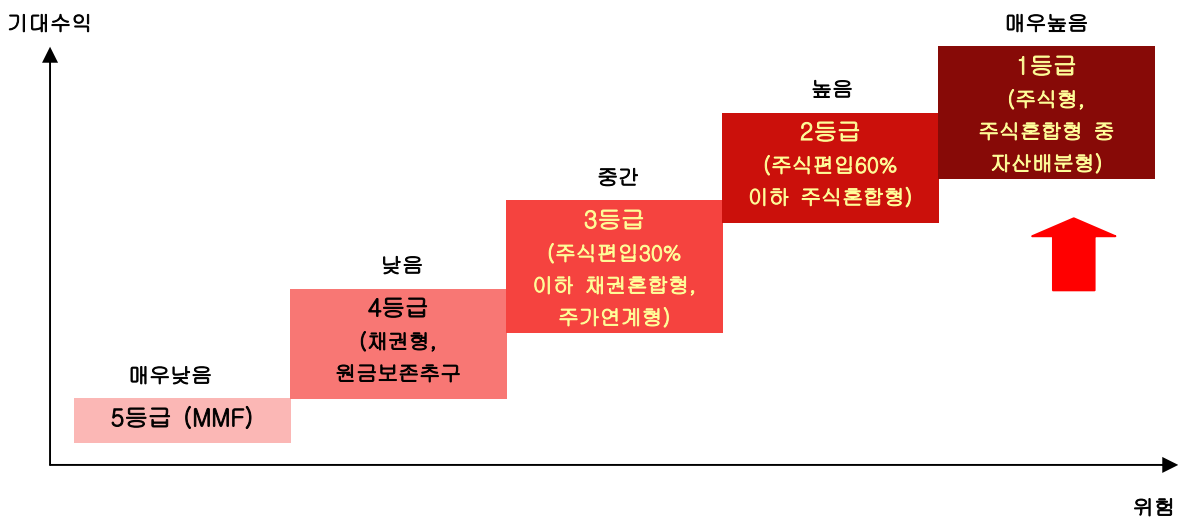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4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중 ‘2. 투자위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지구온난화의 완화·적응·대응 분야산업 관련 외국주식”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 및 환율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성이 높아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가장 높은 1등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해외금융시장의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타 간접투자증권에 비해 높은 시장위험과 환율변동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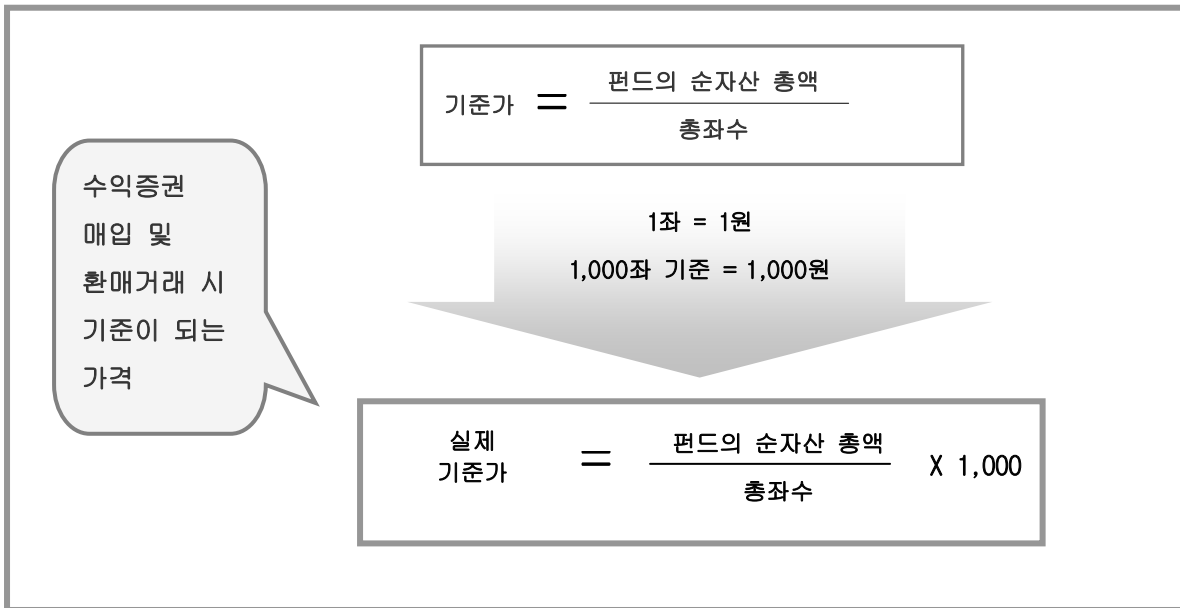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자위험등급기준 >>



위험등급	위험수준	당사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
1등급	매우높음	주식형 예) 부자만들기 주식투자신탁 제1호
2등급	높음	혼합형 예) 기업Company 혼합투자신탁 제 B1호
3등급	중간	회사채 투자 채권형 예) 부자만들기 30혼합투자신탁 제1호
4등급	낮음	국공채 투자 채권형 펀드 예) Clean-Up 3M 국공채투자신탁 제1호
5등급	매우낮음	MMF 펀드 예) 국공채 신종 MMF 제1호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간접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다릅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ditm.co.kr), 판매회사(www.kyongnambank.co.kr , www.kjbank.com , www.daishin.co.kr , www.imeritz.com , www.shs.co.kr , www.keb.co.kr , www.wooribank.com , www.hanabank.co.kr , www.cjcyber.com , www.ditm.co.kr),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펀드수	자산규모	
신민수	32	펀드 매니저	8	710억원	- 현,대신투신 해외사업부 해외펀드운용 - 메트라이프 자산운용팀 변액펀드 운용

주) 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운용은 해외위탁운용사인 SAM 서스테이너블 에셋 매니지먼트의 PhD. Thiemo Lang 을 대표펀드매니저로 한 운용팀에서 운용합니다.

※ 상기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34 페이지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 설정이후 1년미만펀드로서 해당사항 없음

III. 수수료, 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 분	지 급 비 율	지 급 시 기	비 고
선취판매수수료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클래스 C1 : 해당사항 없음 클래스 C2 : 해당사항 없음 클래스 C3 : 해당사항 없음 클래스 C4 : 해당사항 없음 클래스 C-W : 해당사항 없음	수익증권 취득시	판매회사 취득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 이익금의 50%	환매시	신탁재산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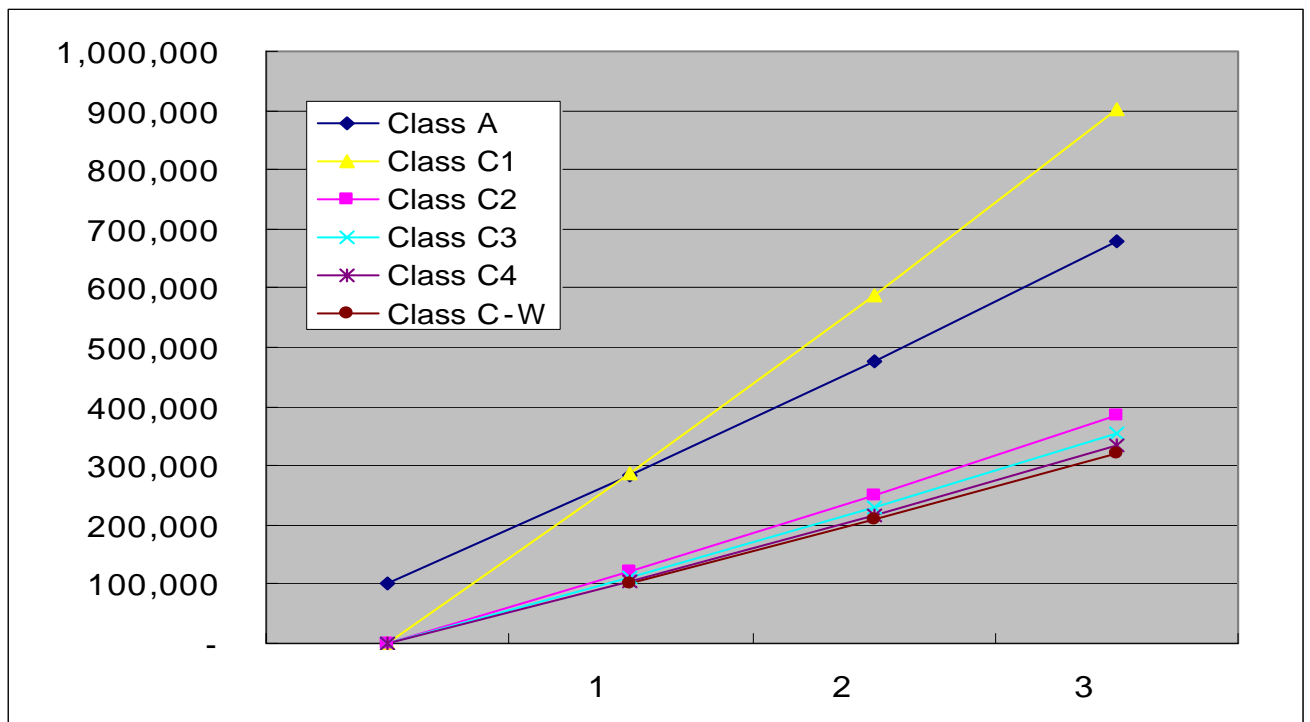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 급 비 율	지 급 시 기	비 고
운용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90%	매 3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전부해지시	일할 계산
판매보수	클래스 A : 순자산총액의 연 0.80% 클래스 C1 : 순자산총액의 연 1.80% 클래스 C2 : 순자산총액의 연 0.20% 클래스 C3 : 순자산총액의 연 0.10% 클래스 C4 : 순자산총액의 연 0.05% 클래스 C-W : 순자산총액의 연 0.00%		
수탁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6%		
일반사무관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2%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15%	사유발생시	
총보수·비용비율 (기타비용 미포함)	클래스 A : 순자산총액의 연 1.780% 클래스 C1 : 순자산총액의 연 2.780% 클래스 C2 : 순자산총액의 연 1.180% 클래스 C3 : 순자산총액의 연 1.080% 클래스 C4 : 순자산총액의 연 1.030% 클래스 C-W : 순자산총액의 연 0.980%		
총보수·비용비율 (기타비용 포함)	클래스 A : 순자산총액의 연 1.795% 클래스 C1 : 순자산총액의 연 2.795% 클래스 C2 : 순자산총액의 연 1.195% 클래스 C3 : 순자산총액의 연 1.095% 클래스 C4 : 순자산총액의 연 1.045% 클래스 C-W : 순자산총액의 연 0.995%		

-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종류수익증권별 기준에 따라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3.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4. 해외위탁운용사에 대한 위탁운용보수는 자산운용사의 운용보수내에서 지급합니다.
 5.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구분	1년차 (원)	3년차 (원)	5년차 (원)	10년차 (원)
클래스 A	283,988	680,021	1,116,647	2,414,175
클래스 C1	286,488	903,152	1,583,024	3,603,409
클래스 C2	122,488	386,142	676,821	1,540,635
클래스 C3	112,238	353,829	620,183	1,411,711
클래스 C4	107,113	337,672	591,864	1,347,250
클래스 C-W	101,988	321,516	563,545	1,282,788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 매입, 환매, 분배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 (다) 수익증권의 적용매입가격 예시

	제1영업일	제2영업일	제3영업일
17시(오후5시)이전	자금납입영업일	-----	판매기준가격
17시(오후5시)경과후	자금납입영업일	-----	판매기준가격

※ 당해 투자신탁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29 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언제든지 수익증권을 환매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8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 17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5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9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17시(오후5시)이전	환매청구일	환매적용기준가격	환매대금수령일
17시(오후5시)경과후	환매청구일	환매적용기준가격	환매대금수령일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 담 비 율						비고 (지급 시기)
	클래스 A	클래스 C1	클래스 C2	클래스 C3	클래스 C4	클래스 C-W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50%,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시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1) 유가증권 투자전략

- ✓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투자신탁-모」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실질투자비중은 90%내외에서 이루어지나,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증권투자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내외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환헤지전략을 최대한 실행할 예정이나 현실적으로 환율변동위험에 따른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 ✓ 지구온난화와 관련되어 향후 가장 유망하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전세계 기업에 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며, 지구온난화관련산업가운데 지구온난화완화, 지구온난화적응, 지구온난화대응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합니다.
 - ✓ 지구온난화산업과 관련되고 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외국기업주식(공모주포함)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등의 금리, 주가,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자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외화표시자산은 지속가능성투자부문의 선도적 전문운용사인 샘 서스테이너블 에셋 매니지먼트(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에 위탁운용되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 및 투자섹터는 향후 투자, 운용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도 환매시 또는 편입자산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BM)= MSCI World(Euro)*90% + Call Rate*10%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종류형주식투자신탁-자 1호(H) 투자전략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투자신탁-모에 주로(90%수준) 투자하고 나머지 유동성 자산은 채권,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참고 1. 섹터별 투자유니버스

① 지구온난화완화

지구온난화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감소, 지구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향상 등에 기여하는 투자섹터

하부산업

- 저탄소에너지기술산업
- 수요측면 에너지효율산업
- 저탄소교통시스템산업
- 토지이용 및 흡수원분야의 탄소배출감축산업

② 지구온난화적응

지구온난화 적응은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투자섹터

하부산업

- 물기반시설산업
- 해안기반시설산업
- 지식 및 조기경보시스템산업
- 건축기반시설산업

③ 지구온난화대응

지구온난화 대응은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투자섹터

하부산업

- 재난구조산업
- 재난복구산업

지구온난화산업의 3가지 섹터

* 출처: SAM 그룹

참고 2. 투자섹터별 하부산업 설명

① 지구온난화완화

- 저탄소에너지기술산업(Carbon Light Power Technologies)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없거나 적은 상태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주로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천연가스발전, 발전에 따른 이산화탄소포집, 저장에 필요한 기술 또는 공정 등의 산업이 해당합니다.
- 수요측면 에너지효율산업(Demand-side Energy Efficiency)
수요자가 선호하는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주로 에너지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 공정을 적용한 단열재, 조명, 설비관리, 난방, 환기, 냉방 등의 산업이 해당합니다.
- 저탄소교통시스템산업(Carbon Light Transportation Solutions)
탄소배출량이 적은 교통체계와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주로 천연가스연료,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첨단추진시스템, 교통시스템, 경량화, 공기역학기술 등과 관련된 산업이 해당합니다.
- 토지이용 및 흡수원분야의 탄소배출감축산업(Emission Reduction from Land Use and Sinks)
온실가스흡수, 자연생태계의 온실가스 저장능력향상과 관련된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바이오매스

(Biomass)연소 및 이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정, 장치산업, 산림관리, 산림흡수원, 토지이용 변경 등과 관련된 산업이 해당합니다.

② 지구온난화적응

- 물기반시설산업(Water Infrastructure)

기후변화에 따라 수로, 수관, 댐, 하수로, 강수량, 증발량, 누수, 지하수와 관련된 수처리의 새로운 변화여건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물기반시설과 관련된 산업이 주로 해당합니다.

- 해안기반시설산업(Coastal Infrastructure)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평균해수면, 태풍발생, 폭풍우의 빈도 및 강도의 새로운 변화여건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항구, 해안선, 독길, 태풍방호시설 등의 해안기반시설과 관련된 산업이 주로 해당합니다.

- 지식 및 조기경보시스템산업(Knowledge & Warning Systems)

기상 및 기후시스템 또는 기상장비, 무선센서, 지리정보시스템(GIS), Mapping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 기후변화이해, 안내결정, 관리감독을 돕는 서비스, 기타 기상 및 기후에 영향받는 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데이터 및 지식의 수집, 분석, 배분 등과 관련된 산업이 주로 해당합니다.

- 건축기반시설산업(Building Infrastructure)

새로운 기후 및 기상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물, 해안선이외의 기타 기반시설과 관련된 산업이 주로 해당합니다. 내진설계공법, 폭풍우에 견디는 고강도지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③ 지구온난화대응

- 재난구조산업(Disaster Relief)

자연재해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영리, 비영리조직, 개인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관계된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주택, 학교, 응급구조차량 및 장비, 렌탈장비, 무선전화기, 임시발전시설 등과 같이 피해를 당한 해단지역 기반시설의 긴급수요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활동 등이 해당합니다.

- 재난복구산업(Reconstruction)

자연재해가 발생한 이후 피해복구 및 정상화를 지원하는 영리, 비영리조직, 개인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관계된 기업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기계류, 건축자재, 교통 및 통신서비스, 석유 및 가스서비스, 항만재건서비스 등이 해당합니다.

참고 3. 샘(SAM)의 투자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



참고 4. 대신지구온난화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① 지역별 분포

구분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비중	(49.09)%	(43.25)%	(7.66)%

② 섹터별 분포

구분	완화	적응	대응
비중	(68.54)%	(16.99)%	(1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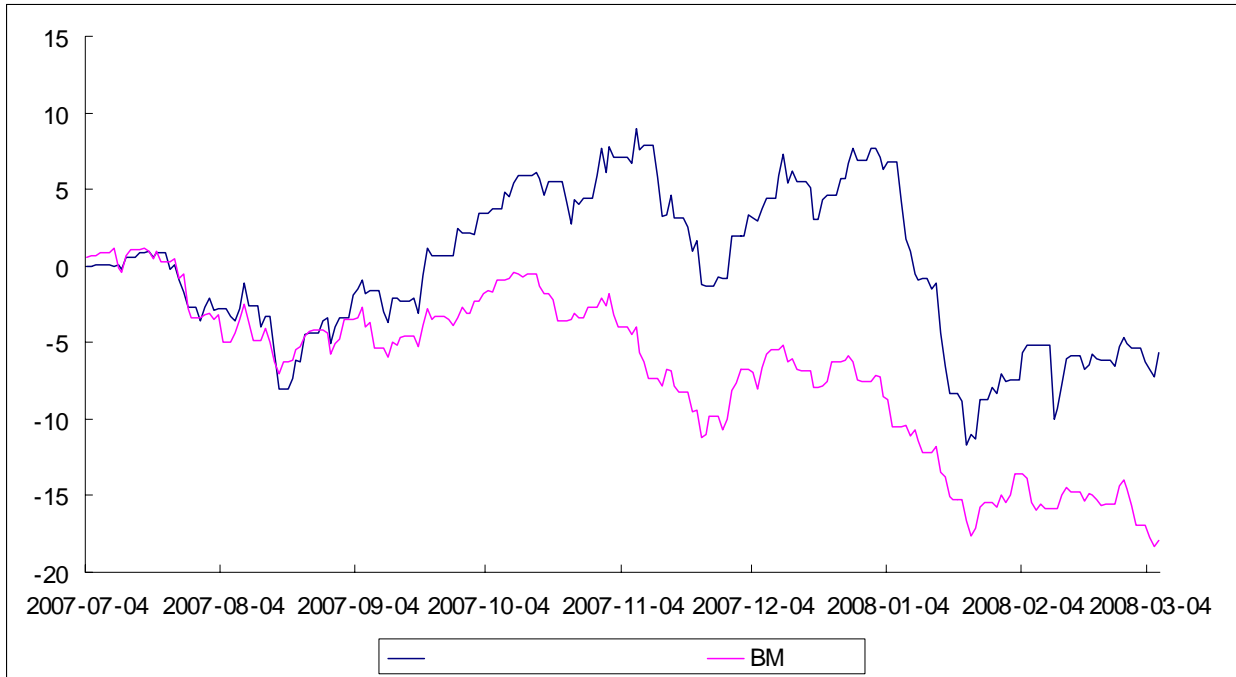
③ 시가총액 분포

구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비중	(35.71)%	(32.14)%	(32.14)%

④ 산업별 분포

구분	산업재	설비	소재	에너지	생필품	정보기술
비중	(55.39)%	(16.14)%	(12.38)%	(8.16)%	(5.14)%	(2.79)%

⑤ 벤치마크지수대비 누적성과추이(설정 이후 2008년 3월 4일까지)



* 과거 성과가 미래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모투자신탁 표시통화인 유로화 대비 자투자신탁 표시통화인 원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자투자신탁차원에서 환헤지를 합니다.(목표헤지비율: $90\% \pm 10\%$). 그러나 펀드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 헤지,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모투자신탁의 표시통화인 유로화와 모투자신탁에서 지구온난화의 완화·적응·대응 분야산업 관련 외국주식(공모주포함) 등에 주로 투자하는 해당 지역의 현지통화간 환헤지는 별도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며 이에 따른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주로 유로화 등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2. 투자 위험

(1)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 당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이 해외주식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헤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산운용회사는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모투자신탁 표시통화인 유로화 대비 자투자신탁 표시통화인 원화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자투자신탁차원에서 환헤지를 합니다(목표헤지비율: 90%±10%). 그러나 펀드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 헤지,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당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주식시장의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운용과정에서 운용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 대상

[자투자신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1. 모두투자신탁	100%이하	-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투자신탁-모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	10% 이내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만기 1년 이내의 금융기관 예치
3.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	15% 이하	-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당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이하 - 통화관련 장내/장외 파생상품(선물환, 통화선물, 통화 옵션, 통화스왑, 통화스왑선등)으로서 외화자산총액 이내에서 해지목적으로만 투자
투자비율 적용예외		다음 경우에는 위의 1.~2.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모두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1.~2.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 자 대 상 세 부 설 명
1. 외국주식	60%이상	- “지구온난화의 완화 적응 대응 분야산업과 관련된 전세계 기업 등”이 해당국가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거나 상장예정인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주식(공모주 포함)
2. 채권	40%이하	-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는 제외한다) 및 법 제2조 제 7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어음	40%이하	-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증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 및 법 제 2조 제 7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법 제 2조 제 7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으로서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100%이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6. 수익증권	5%이하	- 신탁업법에 따라 발행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 단,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및 상장간접투자증권은 30% 이하
7. 투자증권의 대여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100분의 50이하
8.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	15%이하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 옵션,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 및 법 제 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의 유가증권 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금리선물, 금리옵션 및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9.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
10. 투자증권의 차입	20%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주) 다음 경우에는 위의 제 1 내지,5 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제 1,2,3,4,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투자신탁]

구분	내 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시행령 제 77 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1 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 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 월이 되는 날 이전에 당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이 당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위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당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자투자신탁의 투자대상중 3. 통화관련장내·외파생상품 및 당해 자투자신탁의 투자제한)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모투자신탁]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 당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77 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 당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운용사 투자	-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 발행주식	- 당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당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당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이 당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당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주식	- 당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후순위채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사모사채 투자	- 법 제 2 조제 3 항 또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자산의 평가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 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 (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 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아서는 아니된다.
 - 회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 매매를 위탁

IV. 매입, 환매 및 분배 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수익자가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더라도 자산운용회사의 추가 설정 여부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

한 날의 제 6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 7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 26 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분배등 관련 유의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분배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 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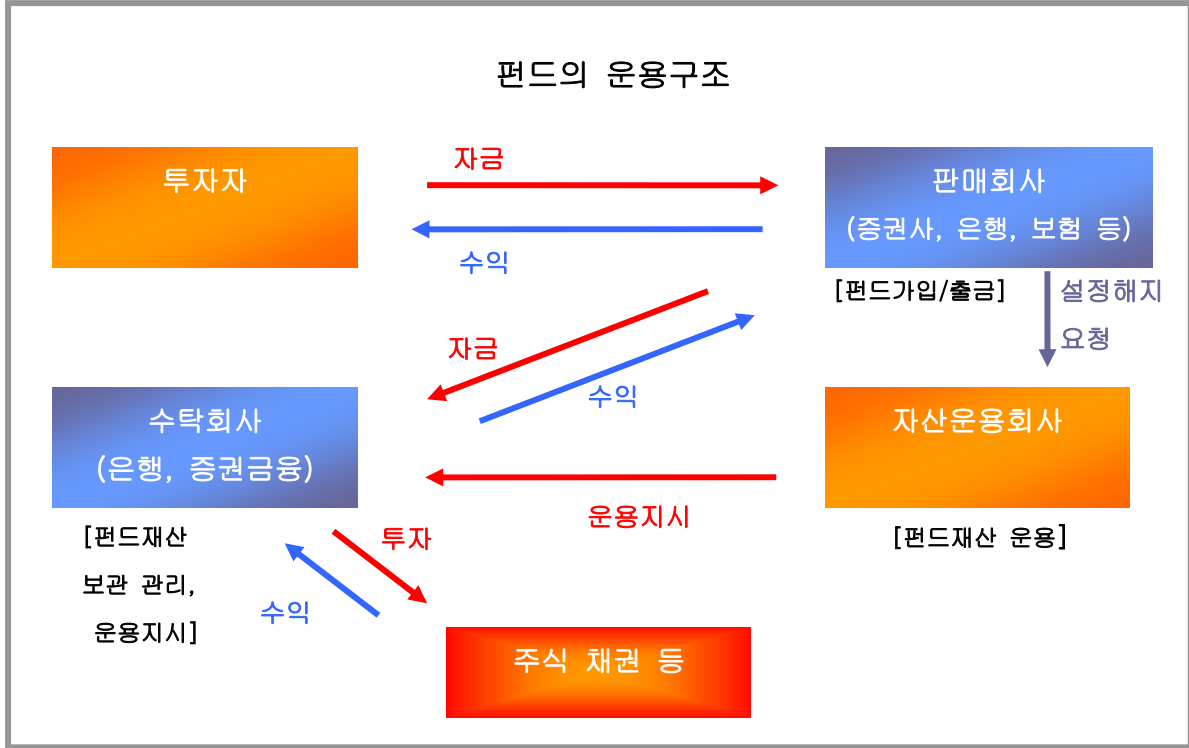
□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

- ①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판매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 개요

- 회 사 명: 대신투자신탁운용(주)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TEL : 769-3233)
- 연 혁
 - 1988.03.24 대신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10억 원)
 - 1988.04.01 투자자문업 등록(재무부 등록번호 제8호)
 - 1988.10.27 미 SEC 등록
 - 1996.06.11 자본금 300억으로 증자
 - 1996.07.01 대신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1999.02.19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경영 인가(재정경제부)
 - 2001.07.05 Daishin Asset Investment System(DAISYS) 2002 개발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의 위탁

①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 176 조와 법 시행령 제 164 조에 의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신탁재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나. 조사분석업무

다. 단순 매매주문업무

②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운용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① 이 투자신탁의 약관 시행일 현재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샘 서스테이너블 에셋 매니지먼트 (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로 합니다.

②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해외자산운용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투자자문사를 선정, 변경,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자산운용회사보수에서 자산운용회사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운용회사가 협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④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해외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

①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에 편입되는 외화표시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외투자자문회사를 선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조언

나. 투자신탁재산을 위한 투자정책과 관련된 조언 및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투자정보

나 자료를 제공

다. 기타 가항 내지 나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요약 대차대조표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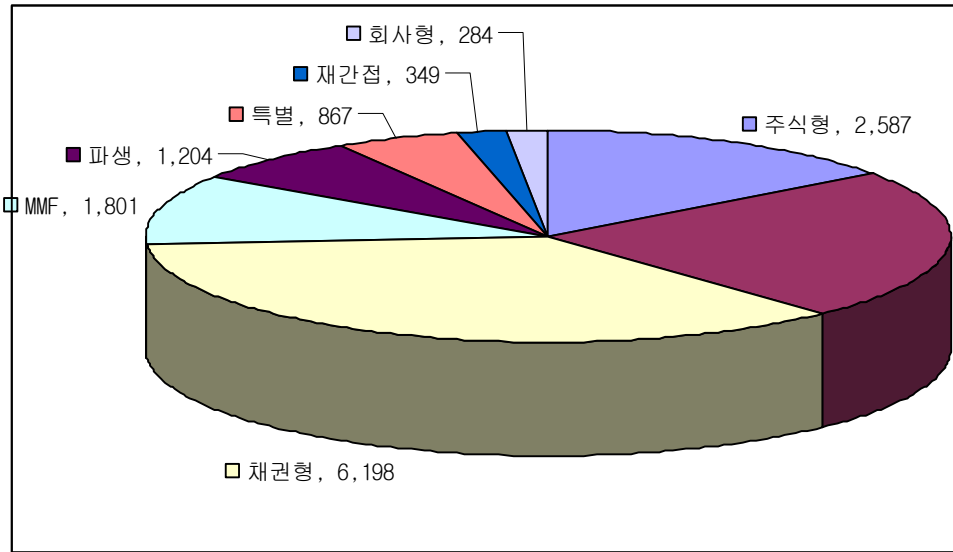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 억원>

계정과목	2007.3.31	2006.3.31	계정과목	06.4.1 ~ ~ 07.3.31	05.4.1 ~ 06.3.31
유동자산	368	374	영업수익	58	57
고정자산	41	40	영업비용	46	40
자산총계	409	414	영업이익	12	17
유동부채	4	4	영업외수익	0	0
고정부채	1	0	영업외비용	0	0
부채총계	5	4	경상이익	12	17
자본금	300	300	당기순이익	9	12
이익잉여금	104	110			
자본총계	404	410			

4. 운용자산 규모

(2007.12.31.기준, 단위 : 억좌)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	특별	재간접	회사형	총계
2,587	3,984	6,198	1,801	1,204	867	349	284	17,274



5.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협회 등록번호
			펀드수	자산규모		
신민수	32세	펀드 매니저 / AICPA	8	710억원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메트라이프(주) 자산운용팀 변액펀드 운용 - 현, 대신투신운용(주) 해외사업부 해외펀드 운용	투협07-01007-0047

주)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은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 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해외위탁운용사]

성명	직위	학력	주요경력
PhD, Thimeo Lang	펀드매니저	- University of Stuttgart, Diploma of Electronics -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of Grenoble, - PhD. Optics/Photonics	- Development engineer, Siemens - Technology Analyst, Portfolio Manager, HypoVereinsbank - Senior Portfolio Manager, Sam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주) 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의 외국통화표시자산의 운용은 해외위탁운용사인 SAM 서스테이너블 에셋 매니저먼트의 PhD. Thimeo Lang을 대표펀드매니저로 한 운용팀에서 운용합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1) 우리은행(주)

- 주 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 연 락 처: 080-365-5000
- 영업점포 현황: 전국 총 608개 지점 ※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m) 참조

2) (주)하나은행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 연 락 처: 02)1588-1111
- 영업점포 현황: 전국 총 570개 지점 ※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bank.com) 참조

3) (주)광주은행

-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316
- 연 락 처: 02)1588-3388
- 영업점포 현황: 전국 총 99개 지점 ※ 인터넷 홈페이지(www.kjbank.com) 참조

4) 대신증권(주)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 연 락 처: 02)769 - 2000
- 영업점포 현황: 전국 총 124개 지점 ※ 인터넷 홈페이지(www.daishin.co.kr) 참조
- 주요판매 실적: 2005년말 22,886억좌, 2006년말 20,950억좌

5) 메리츠증권(주)

-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 연 락 처: 1588-3400
- 영업점포 현황: 전국 총 30개 지점 ※ 인터넷 홈페이지(www.imeritz.com) 참조

6) 신한증권(주)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 연 락 처: 080-7733-080
- 영업점포 현황: 전국 총 14개 지점 ※ 인터넷 홈페이지(www.shs.co.kr) 참조

7) (주)경남은행

- 주 소: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 연 락 처: 1600-8585
- 영업점포 현황: 전국 총 145개 지점 ※ 인터넷 홈페이지(www.kyongnambank.co.kr) 참조

8) (주)외환은행

-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 연 락 처: 1544-3000
- 영업점포 현황: 전국 총 329개 지점 ※ 인터넷 홈페이지(www.keb.co.kr) 참조

9) CJ투자증권(주)

-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153-10
- 연 락 처: 1588-7171
- 영업점포 현황: 전국 총 45개 지점 ※ 인터넷 홈페이지(www.cjcyber.com) 참조

10) 대신투자신탁(주)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번지 대신증권 빌딩 9층
- 연 락 처: 02-769-3246
- 영업점포현황: 본점 1개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가.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환매업무

나.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광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 57 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1) 회 사 명: (주)하나은행
- 2) 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1588-1111)
- 3) 자 본 금: 9,872억 원
- 4) 회사연혁
 - 1971.06 한국투자금융(주) 설립
 - 1993.07 은행으로 전환
 - 1998.10 충청하나은행으로 출범
 - 1999.01 합병 하나은행으로 출범
 - 2002.12 서울은행과 통합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자산운용회사의 투자 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
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1)회 사 명: 아이타스 주식회사
- 2)회사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전화 : 2168-0400)
- 3)회사연혁: 2000년 6월 15일 회사설립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1) 채권평가회사: 한국채권평가(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회사연혁

설립일: 2000.5.29

등록일: 2000.7.1

자본금: 50억 원

2) 채권평가회사: KIS채권평가(주)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 회사연혁

설립일: 2000.6.20

등록일: 2000.6.30

자본금: 30억 원

3) 채권평가회사: 나이스채권평가(주)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층

➤ 회사 연혁

설립일: 2000.6.20

등록일: 2000.6.30

자본금: 55.5억 원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통지

□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수익증권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의결사항

□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 변경, 신탁기간 변경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4) 의결권

□ 의결권은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의결방법

□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업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6) 연기수익자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 서류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 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나.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다.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라.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가.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나. 수탁회사의 변경

다.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라.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마.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바.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아래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②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기타 장부 서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 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ditm.co.kr), 판매회사(www.kyongnambank.co.kr, www.kjbank.com,

www.daishin.co.kr, www.imeritz.com, www.shs.co.kr, www.keb.co.kr, www.wooribank.com,

www.hanabank.co.kr, www.cjcyber.com, www.ditm.co.kr) 및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나.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라.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마.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바.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사.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자.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다.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나.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여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철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대신 지구온난화투자주식종류형투자신탁-자 1호(H)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 판 매 일 : _____ 년 월 일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 투자자 확인 사항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